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이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2004 상고기각

[당사자]

원고, 상고인 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89. 2. 21. 선고 88구3736

[주문]

상고기각

[이유]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하며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질병의 자연악화의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당원 1975. 10. 7. 선고 75누148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 망 심○○의 직접사인은 폐혈증이고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장폐색증이며 선행사인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이다. 백혈병은 현대의학상 아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과로가 백혈병을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백혈병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킨다거나 과로로 인하여 폐렴이나 장폐색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시킨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망인이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열악한 환경 아래서 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백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망인이 소론과 같은 환경에서 과로하였다고 하여 그의 질병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일반적으로 과로가 질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 위 망인이 과로를 하여 이 사건의 질병을 급속하게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의 사망원인이 소론과 같이 공해물질 흡입 내지 과로에 있다거나 그의 이 사건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